



제434회국회(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보도PP의 사추위 설치·운영의무 이행 확보 수단 >
■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768호)

2026.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보도PP의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의무 이행 확보 수단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민수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6. 3. 26.

다. 회 부 일 : 2026. 3.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시 보도채널의 경우 방송사업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간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통해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보도채널에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을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마저도 이행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제20조제5항 및 제108조제1항제2호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보도PP의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의무 이행 확보 수단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PP”)에 대한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규정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20조(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1)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의3. (생략) <u><신 설></u> 3. ~ 28. (생략) ② · ③ (생략)	제108조(과태료) ① ----- ----- ----- 1. ~ 2의3. (현행과 같음) 2의4. 제20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 28.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1) 「방송법」

제20조(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②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는 제3항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방송사업자의 이사회가 임명한다.

나. 검토 의견

-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함),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MBC”라 함),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라 함)은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두어야 하고,²⁾
보도PP는 대표자 임명에 앞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라 함)를 설치·운영하여야 함.³⁾
- 보도PP는 사추위를 설치하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야 하고, 사추위의 인원, 구성방식, 후보자 추천 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하여 운영규칙으로 정하여야 함.⁴⁾

2) 「방송법」

제20조(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를 말한다)의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각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3) 「방송법」

제20조(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②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는 제3항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방송사업자의 이사회가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방송법」

제20조(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인원, 구성방식, 후보자 추천 기한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하여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또한, 사추위에 관한 규정은 지난 2025년 8월 현행법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법률 제21043호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보도PP의 대표자는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표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방송법」 법률 제21043호 부칙
제3조(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 및 보도책임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보도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부칙 제3조는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추위를 통해 보도PP의 대표자를 새로 임명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나, 법률이 2025.8.26. 시행되고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새로운 대표자 임명을 위한 사추위가 구성되지 아니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 따른 의무 미이행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의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시정명령 규정의 필요성과 함께 종전 규정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현행법 제20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보도PP에 대하여 일반적인 시정명령의 근거인 제99조⁵⁾를 적용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도 있으나, 수범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제재처분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그러나, 현행법 제18조⁶⁾에 따르면 제9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송사업자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 또는 승인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는 권한도 이미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존하는 제도를 이용하여서도 충분히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더욱이, 사추위 설치라는 별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이행강제수단인 시정명령을 새로 도입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의무 미이행

5) 「방송법」

제99조(시정명령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2. 이 법 또는 허가조건·승인조건·등록요건 또는 신고수리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6) 「방송법」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9.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에 적용하는 것이 소급 입법에 해당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권한 도입 대신 현행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보임.

○ 둘째,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추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수범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그러나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로서 과거의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 또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 수단에 그친다는 점에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실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무자에게 금전부과를 통해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이며,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하여는 그 근거를 현행법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금액 산정 기준과 연간 부과 횟수 상한 등을 포함하여야 함.⁷⁾

7) 「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 이행강제금은 ①수범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고, ②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점⁸⁾, ③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성질을 달리하므로 과태료와 병과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순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제재처분을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 최소 침해성의 원칙 등을 감안하여 어떤 수단이 적절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셋째, 개정안에 관한 방미통위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도PP의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의무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 의무 위반의 경우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고, 시정명령 미이행이 방송평가에 반영되고, 방송평가점수가 재허가·재승인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요건
3. 부과 금액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5.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8)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심사에 반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규정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YTN은 사업자의 노력이나 귀책을 고려하지 않은 제재처분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며, 현행법 제99조에 따른 시정명령이 가능한 체계에서 별도 제재조항 신설은 중복규제에 해당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연합뉴스TV는 개정 방송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이를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사추위 구성·운영을 위해 노사 협의, 주주와의 소통 등이 요구되며 필수 행정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개정안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이를 종합하면, 현행법에 따른 의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현존하는 제도로 충분히 규율 가능하지는 않은지, 과태료보다 더 적절한 수단은 없는지와 방미통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26
